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0906    |
| 의 퇴 인  | 민홍철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6.27. |
| 추 계 번호 | 24B1191    |

#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조<br>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8조<br>(기본계획의 수립)       | <p>국토교통부장관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</p> <p>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수요 예측</li> <li>2. 광역철도 건설의 경제성·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</li> <li>3.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</li> <li>4. 공사 내용,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</li> <li>5.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</li> <li>6. 연차별 공사시행계획</li> <li>7. 환경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지진 대책</li> <li>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| <p>의무규정</p> <p>의무규정</p>             |
| 3  | 안 제10조<br>(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) | 제9조에 따른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, 사업 구역, 사업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“실시계획”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·<br>재량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2조<br>(주변지역개발사업)      | <p>시·도지사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</p> <p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, 지정·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재량규정</p> <p>의무규정</p>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3조<br>(재정 지원)         | <p>국가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건설비와 차량구입비는 100분의 70 이상을 부담하며, 동남권순환광역철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함(제1항)</p> <p>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(제2항)</p> <p>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, 재정 지원 규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의무규정</p> <p>재량규정</p> <p>의무규정</p>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6  | 안 제14조<br>(부담금 등의 감면)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 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| 7  | 안 제17조<br>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 |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1)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1) 제11조(시설 기준 등)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.

## 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근거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       | • 미대상: 선언적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              | 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3  | 안 제10조(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2조(주변지역개발사업)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3조(재정 지원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안 제14조(부담금 등의 감면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안 제17조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사유

- 제정안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,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,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재정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<sup>2)</sup>를 진행하고 있어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지역, 시·종착점 등이 미확정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8조)에 따른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   - 다만, 국토교통부의 최근 철도건설사업을 실시한 유사사례는 [참고자료]에서 확인할 수 있음

2) \*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사업현황

- 기본계획 수립 전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2021.7)에 반영되어 사전타당성 조사 진행중  
※광역철도 지정→사전타당성조사→예비타당성조사→기본계획수립→기본·실시설계→실시계획→착공→개통

\* 사업개요(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준)

- 사업범위: 경전선 진영역~KTX 울산역 복선전철, 51.4km

- 총사업비: 1조 9,354억원

□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(안 제10조)·주변지역개발사업(안 제12조)·재정 지원(안 제13조)

- 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시·도지사가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, 국가가 건설사업 비용 중 건설비와 차량구입비의 100분의 70 이상,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고, 주변지역예정지역 개발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실시계획 수립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고,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, 지정·변경 절차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점, 현재 동남권순환광역철도 노선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특정하기가 곤란한 점, 해당 지역별 개발사업 및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이 불확정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부담금 등의 감면(안 제14조)

-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
- 그런데 현재 동 사업지역별로 부과될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 등의 규모, 감면을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(안 제17조)

- 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에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런데 현재 동 사업 시행 지역 내 체육시설 설치계획, 지원규모 등 추계에

필요한 기초정보가 부재하여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 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, 철도건설 기본계획, 노선 및 시·종착점 등이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[참고자료]의 추계 결과는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문지은 | 이유미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문지은 | 02-6788-4645 | mtsophia@assembly.go.kr |

## [참고자료]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건설 관련 재정소요 추계 참고자료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### □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8조)

-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경기도 광명부터 수색차량기지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“수색~광명 고속철도 건설산업”을 통해 추정해볼 수 있음
- 개요: 경기도 광명, 용산, 서울역을 거쳐 수색차량기지까지 고속철도 전용선을 지하에 건설하는 사업(23.6km)을 추진중에 있으며, 2023년 “수색~광명 고속철도 건설산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” 연구용역이 발주되어 실시되고 있고(26억 9,300만원), 2025년 착공~2030년 완공목표로 하고 있음
  -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총 23.6km 구간에 대하여 26억 9,600만원이 소요되며, 연장(km)당 평균 1.1억원으로 나타남

[유사사례 사업 현황]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 장(km) | 연구용역 사업비(백만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수색~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| 23.6    | 2,693         |

자료: 조달청 나라장터 및 국토교통부 제출자료